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5 - 34
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일·숙직비 기준경비가 행정자치부 훈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정해짐에 따라 우리 구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조례에 따로 정하여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(행정자치부 훈령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5. 3. 19. ~ 2015. 4. 8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3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급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료”를 “당직근무자에게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지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<u>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60,000원씩 지급한다. 다만,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의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,000원씩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<u>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당직</u> <u>근무자에게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시행규칙) 그 밖에 당직수당 <u>지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<u>지급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